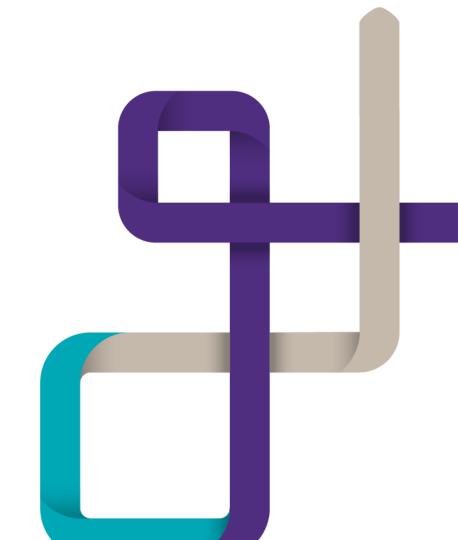


신규 법규정 업데이트

2020 년 10 월



# Content

베트남은 투자유치 및 촉진을 위해서 국내기업 경영 환경개선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을 위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세 감면, 납세 연장 등 정 책 을 획 기 적 으 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Tax Newsletter 에 서 Thornton Grant Vietnam은 최근 발행 된 중요한 정책을 업데이트 하고자합니다.



국가산업발전 계획 이행을 위 한 정 부 행 동 계 획 결 의 안 No.124/NQ-CP



국 회 결 의 안 No.116/2020/Q H14 의 시행령 114/20202/ND-CP : 2020 년 법 인 세 30% 감면



국 산 자 동 차 에 대한 특별 소비세 납부 기간 연장에 관한 시행령 No.109/2020 /ND-CP



EPE 가 국내기업에 제 공 하 는 임 가 공 서 비 스 에 대 한 VAT 처리



피부양자 등록 및 가 족 공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 안내

## 1. 국가산업발전계획 이행을 위한 정부 행동계획 결의안 No.124/NQ-CP

정부는 2030 년까지 국가 산업 발전 계획의 이행을 위한 결의안 No.23-NQ / TW(정치국, 2018 년 3 월 22 일자)의 이행 계획에 관한 결의안 No.124 / NQ-CP를2045 년에 대한 비전과 함께2020 년 9 월 3 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GDP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를 것입니다; GDP에서 가공 및 제조업의 비율은 약 30 %에 이르며, 그 중 제조업은 20 % 이상에 이릅니다. 가공 및 제조 산업에서 첨단 산업 제품 가치의 비율은 최소 45 %에 이릅니다. 부가가치산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8.5 % 이상이며 가공 및 제조업은 연평균 10 %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획투자부, 재무부 등 기관에 업무를 배정하여 사업 기여와 관련된 부문별 또는 분야별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정책은 FDI 프로젝트의 인센티브 수준과 기간이 국내 부가가치창출 수준 및 제반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원칙에 따라 수립됩니다. 동시에 개발 우선 순위가 있는 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정책을 연구, 수정 및 보완합니다.



또한 2021 ~ 2025 년에는 재무부 및 관계부처에서 법인세법, 수출세 및 수입세법, 부가가치세 법, 새로운 재산 세법 등을 구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됩니다.

## 2. 국회결의안 No.116/2020/QH14 의 시행령 114/20202/ND-CP : 2020년 법인세 30% 감면

2020 년 9 월 25 일 정부는 2020 년 법인세 감면에 관한 국회 결의안 No. 116 / 2020 / QH14의 이행에 과한 시행령 114 / 2020 / ND-CP를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114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년 매출액 2,000 억 VND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2020 년 법인세를 30 % 감면합니다.
- 세금 감면 대상 기업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2020 년 매출액은 기업이 적용되는 가격 보조금, 할증료 및 보충제를 포함한 모든 판매, 처리 및 공급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여 기업의 2020 년 법인세기간 동안 기업의 총 매출액으로 정의합니다. 자본 양도 소득, 부동산 양도 또는 투자 프로젝트 양도 등과 같은 기타 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법 및 지침문서에 따라 적격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업이 2020 년 매출액이 2,000 억 VND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한 경우, 기업은 분기별 법인세 지급액의 70 %에 해당하는 분기별 임시 납부를 결정해야합니다.
- 기업이 역년과 다른 회계 연도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 세법 및 지침서에 따라 회계 연도에 따라 법인세계산 기간이 결정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 회사는 각 특정 사례 별 2020년에 적절한 세금 감면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무부 / 국세청의추가지침에 따라 후속 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 3. 국산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 기간 연장에 관한 시행령 No.109/2020/ND-CP



 ➤ 국산차 또는 조립 자동차의 경우 2020 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의 과세 기간에 SCT 납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2020 년 3 월부터 2020 년 9 월 20 일까지 SCT 지불 가능 결제가 연장됩니다. 2020 년 4 월부터 2020 년 10 월 20 일까지 SCT 지불 가능 결제가 연장됩니다.

2020 년 5 월부터 2020 년 11 월 20 일까지 SCT 지 불 가 능 결 제 가 연장됩니다.

2020 년 6 월부터 2020 년 12 월 20 일까지 SCT 지불 가능 결제가 연장됩니다.

▶ 연장 자격이있는 납세자는 규정 된대로 신고해야하지만, 발생한 SCT 를 지불 할 필요는 아직 없습니다.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혹은 늦어도 2020 년 9 월 30 일까지 SCT 지불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야 합니다.

해당 시행령은 2020년 9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명시합니다.

### 4. EPE가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임가공 서비스에 대한 VAT 처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가공기업"("EPE")의 임가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 세무 당국에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국세청에서 발행한 Office Letter No. 3231 / TCT-CS (2020.08.10)

EPE의 임가공활동이 상품거래 및 베트남 내 상품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 국내 기업은 규정에 따라 세관절차를 수행하고,
해외에서 상품처리를 주문하는 경우로 간주됩니다. EPE는 수수료를받을 때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며 현행규정에 따라 "비관세 구역의 조직 및 개인용(For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the non-tariff zone)"이라고

• <u>하노이 세무국에서 발행 한 Office Letter No. 81739 / CT-TTHT 및 81740 /</u> CT-TTHT

회사가 EPE 인 경우 국내기업에 대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기업과 처리 활동을 할 수있는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VAT가 적용됩니다. 회사는 부가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에 별도 회계 및 등록해야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있는 세금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Grant Thornton회계법인에 연락하여 추가 상담을 받으 실 것을 권장합니다.

## 5. 피부양자 등록 및 가족 공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 안내

2020 년 8 월 12 일 박닌 세무부는 결의안 No. 954 / 2020 / UBTVQH14에 따라 개인소득세법의 새로운 가족공제에 관한 공식 서한 No. 2455 / CT-TTHT를 발행했습니다.



회사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2020 년 7 월에 퇴사하고 납세자가 2019 년부터 2020 년까지 결산기간이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2020 년 1 월부터 가족공제율이 결정됩니다. 결의안 No. 954 / 2020 / UBTVQH14: 개인의 경우 VND11,000,000 / 월, 각 부양 가족의 경우 VND 4,400,000 / 월



결의안 No. 954 / 2020 / UBTVQH14의 규정에 따라 신규 가족공제법에 따른 개인소득세 확정 신고 시, 세금 신고 지원 시스템이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관리 세무서에 서면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많은 다른 지방 세무당국도 세금신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기간동안에는 기업이 직접 세무당국에 서류로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연간 개인소득세 마감 문제와 관련하여 Dong Nai Tax Department는 2020 년 8 월 24 일자 지침 Office Letter No. 7950 / CT-TTHT를 발표했습니다.



2019 년 8 월부터 2020 년 7 월까지의 첫 과세 연도의 공제율은 Circular 111의 이전 규정을 따릅니다. 2020 년 1 월부터



2020 년 12 월까지의 두 번째 과세 연도의 가 족 공 제 법 은 결의 안 954 / 2020 / UBTVQH14의 새로운 규정을 따릅니다.

단, 이는 회사의 지역에 따라 지방 세무서의 지시 사항이므로, 시행하기 직전에 관세청과 협의하여 납세 신고 및 납세의 위험을 최소화해야합니다.

### Contact

고객님께서 조세,회계, 가격이전,외국인의활동, 투자,세관및 로동자, 투자정책, 생산영업과정에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자문을 더 필요하시면 우리Grant Thornton 의 전문가들하고 연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소식을 다운로드 하고 싶으신 경우, 우측 링크를 통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Tax Hub

#### Head Office in Hanoi

18<sup>th</sup>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 Hoang Khoi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at.com

권 혁 준 (Kwon Huyck Jun) Director – Korean Desk D +84 24 3850 1679

E hyuckjun.kwon@vn.gt.com

#### Bui Kim Ngan Tax Director

**D** +84 24 3850 1716

E ngan.bui@vn.gt.com

#### **Hoang Viet Dung**

Director - Tax and Transfer Pricing Services

**D** +84 24 3850 1687

E dung.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Vishwa Sharan

Director - Transfer Pricing

D +84 327 345 053

E Vishwa.Sharan@vn.gt.com

김민제 (Kim Minje)

Manager - Korean Desk D

+84 379 591 011

E minje.kim@vn.gt.com

#### Ho Chi Minh City Office

14<sup>th</sup>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 Masato Karoji

Director –Japanese Desk

D +84 28 3910 9135

E masato.karoji@vn.gt.com

#### Valerie - Teo Liang Tuan

Tax Partne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 Lac Boi Tho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0 **E** tho.lac@vn.at.com

© 2020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

